

새출발기금 협업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 (폐업정리)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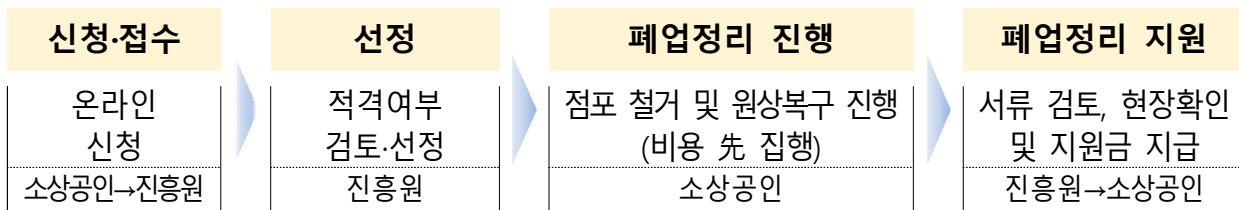
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위한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폐업정리)」의 지원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1일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3. ~ 12. / 선착순 지원, 예산 소진 시 종료
- (지원대상) 새출발기금 매입형 또는 중개형 채무조정 약정 체결한 성실 상환자* 중 대전 소재 폐업(예정) 소상공인
 - * 거치기간 포함하여 심사일 기준 연체 미발생자
- (지원규모) 7개사
- (지원내용) 폐업 시 소요되는 점포철거·원상복구비 최대 500만원 지원
- (추진절차)



2. 세부 지원내용

- (지원내용) 폐업 시 소요되는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외주업체를 통한 철거 및 원상복구 이행 비용 지원(자력 철거 지원 불가)
- (지원금액) 공급가액 기준으로 최대 500만원 지원(부가세 제외)
 - 전용면적 1평(3.3㎡)당 20만원 이내로 금액 제한
 - 공급가액은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초과분 및 부가세 등은 자부담

3.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1 신청자격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p>① 새출발기금 매입형 또는 증개형 채무조정 약정 체결한 성실 상환자* 중 대전광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폐업(예정) 소상공인</p> <p>* 성실 상환자: 거치기간 포함하여 심사일 기준 연체 미발생자</p> <p>※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별 평균 매출액 15~140억원 이하(음식·숙박 15, 도·소매 60, 제조 140 등) / [참고1] -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은 10명 미만)
<p>② 유상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사업자 <p>※ 2026. 1. 1. 이후 폐업자 신청 가능(소급적용)</p>

2 신청제한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에 해당 시 선정 불가

구분	세부내용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차계약을 작성한 경우 ·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가족 간 임대차 계약인 경우
주거용도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 상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유사 사업수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및 지자체의 점포 철거지원 등 유사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p>※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 환수</p>
사업장 이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 하는 경우
제외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리 및 비영리 법인사업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단체 또는 조합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 [참고2]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 필수)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 집기 이동 및 청소는 지원 불가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 3. 31.(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대전비즈 홈페이지(www.djbea.or.kr/biz)
 - ※ 대전비즈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기업회원' 으로 가입 및 로그인해야 신청 가능
- (신청서류)

구분	연번	제 출 서 류	비 고
필 수 제 출	1	사업신청서	붙임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붙임2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붙임3
	4	가족관계증명서(대표자 본인기준, 상세발급분)	
	5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가맹점은 가맹계약서 인정) - 임대인, 임차인, 사용기간, 차임 명시 -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이어야 함 (단, 임차인이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가족일 경우 인정) - 임대인, 임차인 정보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남기고 나머지는 가림 처리 후 제출(중개인 정보는 모두 가림)	
해 당 시	6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고용인원이 있는 경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유의사항 》

- 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 ②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이력이 없는 경우 신청 필수(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소상공인을 확인하는 서류로 진흥원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함
 - 중소기업확인서 상 '소상공인', '소기업(소상공인)' 이 확인되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유효한 확인서야함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중소기업확인서 인정불가
- ③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어려울 시 별도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4. 선정기준 및 지원절차

① 선정기준 및 지원절차

○ (선정기준) 적격여부 검토 후 선착순 선정

- 실제 폐업정리 완료하고 지원금 신청한 업체부터 선착순 지원

○ (세부 지원절차)

①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신청 / 대전비즈(www.djbea.or.kr/biz)
↓	
② 검토 및 선정	· 대상 적정성 여부 검토 및 선정·통보 / 선착순
↓	
③ 철거 및 원상복구 진행	·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후 철거업체 등을 통해 철거 및 원상복구 진행
↓	
④ 비용 선 지급	· 사업주가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철거업체 등에 先 집행
↓	
⑤ 지원금 신청서류 제출	· 정산서류 등 신청서류 제출
↓	
⑥ 지원금 지급	· 현장점검 및 정산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② 폐업정리 지원금 지급 신청 / 세부 지원절차 중 ⑤번 절차 해당

○ (신청대상) 철거 및 원상복구를 완료하고 비용을 先 집행한 사업자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폐업정리지원 완료보고서 및 지원금 신청서	붙임4
2	철거업체 발급 공사내역서	
3	전자세금계산서	
4	(계좌이체) 입금증 또는 이체(송금)확인증 ※ 이체금액·일시, 수취인 성명(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 표기	은행
5	통장사본(대표자 명의)	
6	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유의사항

- 철거·원상복구비(부가세 포함)를 외주업체에 먼저 지출 후 증빙서류를 갖추어 지원금 신청
- 외주업체 비용 지출은 계좌이체 원칙(현금, 카드결제 불인정)
- 부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
- 신청서는 대표자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공고문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사업주에게 있음
- 제출한 서류가 미비 시 필요 서류 추가 요청 예정
- 접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작성 내용이 부정확 및 신청기준에 부적합 시 지원 불가
-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이 배제될 수 있음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 정하는 바에 따름

6. 문 의

- (문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 ☎ 042-380-3065, 380-3061

[붙임]

1. 사업신청서 (붙임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붙임2)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붙임3)
4. 폐업정리지원 완료보고서 및 지원금 신청서 (붙임4)
5.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참고1)
6.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 (참고2)

붙임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이용기관 명칭	대전광역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이용사무(이용목적)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사업
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이용 기간 (주기적으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 기간·주기 명시)	최대 5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번호 등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명, 중소기업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 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주민등록번호(전체 13자리) 기재	-
--------------------	---

년 월 일

대상자(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붙임 4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폐업정리) 완료보고서 및 지원금 신청서

1. 지원업체 현황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대표자 연락처	
사업장 주소			
추천인 (컨설턴트)		컨설턴트 연락처	

2. 지원금 신청사항

신 청 내 역				
총소요비용	※ 지원금 최대 500만원 / 전용면적(3.3㎡) 당 20만원 이내로 제한			
	소요금액 (부가세 제외)	원	지원금 신청액	원
지원금 지급처	※ 반드시 대표자(또는 법인) 본인 명의 통장 기재(불일치 시 지급 불가)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신청금액	원		
시공 완료 사항	시공내용	<input type="checkbox"/> 점포철거 <input type="checkbox"/> 원상복구		
	업체명		소요금액 (부가세 제외)	원
	업체명		소요금액 (부가세 제외)	원
	업체명		소요금액 (부가세 제외)	원

* 필요시 칸 추가 기재

3. 지원사업 결과물

* 해당내용은 시공사 수 만큼 기재 및 첨부(필수)

시공내용	<input type="checkbox"/> 점포철거 <input type="checkbox"/> 원상복구		
외주 업체명 (업체 지역)	()	사업자 등록번호	
외주업체 대표자명		업태/종목	/
사업장 연락처		휴대전화	
시공기간			
시공 전		시공 후	
내·외부 사진		내·외부 사진	
내·외부 사진		내·외부 사진	
<p>신청인과 외주업체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하“진흥원”)에서 시행하는『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 기지원(폐업정리)』에 참여하고 수행함에 있어 다음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불이행시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 할 것을 약속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인은 사업 목적에 맞게 단위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한다. 신청인과 외주업체는 서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 대필 및 수수료 요구, 제3자 부당개입 등 신청인과 외주업체는 과제수행과 관련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법이나 부당한 사항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실시공, 관련서류 위·변조, 선정일 이전 과제 시행, 유사사업 중복수혜 등 위 사항을 위반하여 진흥원으로부터 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익을 제기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026년 월 일		신청업체(대표자)	(인)
		컨설턴트	(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외주업체 대표	(인)
첨부 서류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입금증 또는 이체(송금)확인증, 통장사본(대표자 명의), 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참고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10.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평균매출액등 140억원 이하
2. 1차 금속 제조업	C24	
3.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4. 음료 제조업	C11	
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평균매출액등 100억원 이하
18. 운수 및 창고업	H	
19. 금융 및 보험업	K	
20.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21. 광업	B	
22. 담배 제조업	C12	
2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30. 기타 제품 제조업	C33	
31. 건설업	F	평균매출액등 60억원 이하
32. 도매 및 소매업	G	
33.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4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S(S94 제외)	

참고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제외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표준산업분류	업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